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49 발의연월일: 2022. 10. 18.

발 의 자:서동용・강득구・강민정

권인숙 · 김승남 · 김영호

김용민 · 김의겸 · 김정호

김철민 · 김태년 · 김회재

도종화 • 서삼석 • 소병철

송재호 · 신정훈 · 안민석

유기홍 • 이개호 • 인재근

주철현 · 최인호 의원

(2391)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에 제정, 2022년 1월에 시행되어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완전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먼저,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바, 구체 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 가 보상을 위한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는 법에 규정되어야 함.

둘째,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일정 자격을 갖춘 상임위원을 두어야 함.

셋째, 이 법에 따라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되,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여순사건의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나 신청절차 없이 이 법에 따른희생자로 인정해주어야 함.

넷째, 진상규명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완전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 작성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여순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 청구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 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위한 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희생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그 유족에게도 지원하여야

함.

이에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실무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 다.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 설).
- 라. 위원회가 진상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 및 여수·순천 10·19사건 의 피해자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의 3 신설).
- 마.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안 제5조2항 및 제9조제1항).
- 바. 희생자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신설).

- 사. 위령사업을 위령ㆍ기념사업으로 확대함(안 제13조).
- 아.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법률 제 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준·절 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은"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 무원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7년 이상 종사 한 사람

제4조제3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은"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 무원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4년 이상 종사 한 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신고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의3(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 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여수·순 천 10·19사건의 피해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

- 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피해자에게 사전에 희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을 별도의 신청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희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피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제4조의2에 따른 희생자·유족 신고 및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1948년 11월 14일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1948년 11월 21일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1948년 12월 13일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1949년 1월 19일에 작성된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기재된 사람 또는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거치지 않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 및 그 별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 제12조의3(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1948년 11월 14일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1948년 11월 21일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1948년 12월 13일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1949년 1월 19일에 작성된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또는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 및 그 별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령하고"를 "위령·추모하고"로, "위령제례"를 "위령제례, 기념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령탑"을 "위령·기념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령공원"을 "위령·기념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위령관련"을 "위령·기념 관련"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의료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각각 "의료지원금"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희생자로서"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희생자로"를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사람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
	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여
	<u>야 한다.</u>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
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u>부위</u>	③
<u>원장 1명</u> 을 포함한 15명 이내	<u>원장 1명, 상임위원 1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4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u>위원은</u> 관계 공무원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	<u>에서, 위원은</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	
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	
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⑤ ~ ⑨ (생 략)
- 제4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 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 회) ① • ② (생 략)
 -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

-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 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7년 이 상 재직한 사람
-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 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7년 이 상 종사한 사람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 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 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 ----<u>상임위</u>원은 다음 각 호의 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생 략) <신 설>

에서, 위원은
,

-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사람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 호사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4년 이 상 재직한 사람
-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 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4년 이 상 종사한 자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신 설>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 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신고 방법·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조의3(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여수·순천 1 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 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 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 者)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 서에 명시된 여수·순천 10·19사 건의 피해자를 별도의 신청 없 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 시된 피해자에게 사전에 희생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 건의 피해자로서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을 별도의 신청 없이 희생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 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제6조(신고처 설치 및 공고)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희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 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피해 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동 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2년-----.

③ (현행과 같음)

-----<u>제</u>4조의2에 따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 른 희생자·유족 신고 및 제5조 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 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제9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 종료되는 날부터 <u>6개월</u>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 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 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 - 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 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신설>

세9조(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1)	_
	<u>1</u> 1	<u> </u>		_
				-
				-
				-
				_
				-
				_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로 서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 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 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 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 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1948년 11월 14일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1948년 11월 21 일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1.19 48년 12월 13일에 작성된 「호 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 1949년 1월 19일에 작성된 「보병제5여단 고등군 법회의 명령 제17호 및 각각 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 또는 여수. 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적 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 의 확정판결을 선고한 군법회 의명령서 및 그 별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제12조의3(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신 설>

제13조(위령사업) 국가 및 지방자 저 치단체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

① 위원회는 1948년 11월 14일 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 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1948 년 11월 21일에 작성된 「호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 1948년 12월 13일에 작성된 「호남계엄지구 고등군 법회의 명령 제13호 , 1949년 1월 19일에 작성된 「보병제5 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 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 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또는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 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한 군법회의명령서 및 그 별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 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 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 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33	돈 <u>(</u> 위	령·기	기념	사업	<u>)</u>		
					위 i	려.추	두모충	17-

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u>위</u> 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 1. (생략)
- 2. 위령탑 건립
- 3. (생략)
- 4. 위령공원 조성
- 5. (생략)
- 6. 그 밖의 <u>위령관련</u> 사업

제14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 급)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 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 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위령제례, 기념행사 <u></u> -
1. (현행과 같음)
2. <u>위령·기념탑</u>
3. (현행과 같음)
4. <u>위령·기념공원</u>
5. (현행과 같음)
6위령·기념 관련
<u> </u>
-
- 제14조 <u>(의료지원금)</u> ①
-
-
- 제14조 <u>(의료지원금)</u> ①
- 제14조 <u>(의료지원금)</u> ①
- 제14조 <u>(의료지원금)</u> ①
- 제14조(의료지원금) ① 의료지원금
- 제14조 <u>(의료지원금)</u> ①
- 제14조(의료지원금) ① 의료지원금
- 제14조(의료지원금) ① 의료지원금
- 제14조(의료지원금) ① 의료지원금
- 제14조(의료지원금) ① 의료지원금

3	의료지]원금	및	생호	활지원]금
의	지급범	위와	금액	의	산정	및
지	급방법	등에	필요	오한	사힝	은
대	통령령.	으로 전	성한디	7.		

<신 설>

제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기급신청) ① <u>희생자로서</u>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신청은

	③ <u>의료지원금</u>
	,
제	14조의2(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
	<u>할 수 있다.</u>
	②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
	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
제	15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
	금 지급신청) ① <u>희생자 또는</u>
	<u>유족으로서</u>
	②

내에 하여야 한다	